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24일, 김예지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25.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2.20.)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25.2.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어린이의 경우 뇌가 활발하게 발달하고 신체가 성장하는 시기로 재
활치료 필요 시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 발생을 최

소화하고 발달 지연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음.

또한 어린이 재활 환자는 성인과 달리 성장 및 발달에 상응한 생애 주기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의료 접근성이 높은 거주지역 기반의 재활의료 제공이 매우 중요함.

이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어린이 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호 및 제18조의2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오세일)

개정안은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 특성상 지속적이고 꾸준한 재활치료가 필요함에도 지역 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부족하여 광역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에까지 찾아가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¹⁾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의료법」에 따른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²⁾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조기에 적절한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어린이 재활치료는 고비용·저수익이라는 특성상 민간이 운영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국가가 시설과 운영에 대한 비용

1) 현재 운영 중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는 각각 3개소로 총 6개소임.

2)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재활의학과 진료과목이 있는 의료기관 수는 의원급 5,505개소, 병원급 1,459개소임(2024년 9월 기준).

을 적절히 지원하지 않는다면,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 지정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현재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경우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인력 기준,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등 시설 기준과 같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지정이 가능한데, 이에 대해서는 정부의 별도 지원 없이 만 6세 미만 대상 재활치료, 언어재활치료 등 일부 비급여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소아재활 시범수가를 적용하여 일정 부분 수익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과 유사한 목적으로 광역 단위에 설립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경우는 제22조 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경우는 지정 후 운영비 7억 5천만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지정 후 운영비 2억 4천만원 등을 연간 지원하고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 없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붙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란 어린이에 대한 재활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로 하고,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24조제1호 중 “제18조의3제3항”을 “제18조의4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u><신설></u>	제3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 <u>어린이 재활의료기관</u> ”이란 <u>어린이에 대한 재활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u> <u>제18조의2(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u> <u>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u>
<u><신설></u>	

	<u>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u> <u>2.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u> <u>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u>
제18조의2(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의 설치 등) (생략)	제18조의3(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의 설치 등) (현행 제18조의2와 같음)
제18조의3(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 (생략)	제18조의4(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 (현행 제18조의3과 같음)
제24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청문) ----- ----- ----- ----- -----.
1.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1. 제18조의4제3항-----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